

공사대금 청구소송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17가합 ○○○○○○	사건유형	공사대금
원고	주식회사 ◇◇◇◇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2018. 10. 26.	비고	
사건개요	<p>- 이 사건 공사는 □□□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□□□ 초·중·고등학교 통합교사동, 다목적 강당, 관사동의 신축공사로 그 중 이 사건 1차수 공사는 기존에 있던 기초등교사동 전면에 새로 통합교사동을 신축하고, 기존 관사동 앞에 신사동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, 이 사건 2차수 공사는 기존의 교사동을 철거한 자리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는 것이었으나 주민들이 설계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변경이 되었음.</p> <p>- 원고는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 205,882,386원을 지급하라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</p>		
주 문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피고는 원고에게 50,451,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2.20.부터 2018.10.26.까지는 연 5%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75%는 원고가, 나머지 25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 		
판결이유	<p>가. 법원감정결과 및 변론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과 이 사건 2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일부 중복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위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총 242일이 실비산정의 대상기간이 된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2차수 공기 연장 사유 중 ‘공사방법변경’에 따라 연장된 기간인 108일은 원고가 이 사건 1차수 공사를 지연하면서 연쇄적으로 이 사건 2차수 공사까지 지연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러한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,</p> <p>나. 피고가 총 242일 중 108일 제외한 134일에 대한 추가 간접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, 그에 따른 추가 간접비 중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% 정도 감액한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간접공사비로 판단하였음.</p>		